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7. 15 선고 2021가단1114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전 문

원 고 망 A의 소송수계인

1. B

2.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정

담당변호사 김빈

피 고 D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하

변 론 종 결 2022. 5. 20.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2. 24. 접수 제146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21. 2. 24.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1. 2. 2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2. 24. 접수 제1462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가 무효임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8. 2. 사망하였다.

다.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망인의 자녀인 원고 B과 피고, E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다만 E은 망인 사망 전에 사망하여 E의 자녀인 원고 C가 대습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8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망인의 신분증 및 통장 등을 모두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망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행위인 증여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 아니라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무효사유를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46059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망인에 대하여도 그 추정력이 미치므로 피고는 증여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원인인 증여의 무효사유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6, 7, 14, 15, 36, 3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였던 망인이 사망 전 피고가 망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취지로 자녀 및 손자들에게 말해왔고, 망인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망인은 사망 전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이기도 하므로 망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해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행위인 증여가 무효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당시 첨부된 인감증명서를 망인 본인이 발급받은 사실, 발급신청자란에 망인의 서명이 되어 있는 사실, 발급 날짜가 증여일인 2021. 2. 22.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수진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 건물의 표시

경기도 부천시 F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G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1층 92.155㎡(소매점)

2층 92.155㎡(사무소)

3층 92.155㎡(사무소)

4층 27.26㎡(물탱크실, 계단실)

40.32㎡(주택)

지하 92.155㎡(다방)

2. 토지의 표시

경기도 부천시 F 대 242.6㎡

